

## 국제위원회 규정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조명·전기설비학회(이하 “본 학회”라 한다)가 주관 또는 참여하는 국제기술, 정보교류 및 국제학술행사 등의 제반 국제협력활동을 기획, 진행, 관리, 지원하며 국외의 본 학회 회원의 학술활동 및 상호교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) 본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본 학회에서 주관 또는 참여하는 국제기술 및 정보교류에 관련된 기획, 진행, 관리, 지원 업무
2. 본 학회에서 주관 또는 참여하는 국제학술행사에 관련된 기획, 진행, 관리, 지원 업무
3. 국외의 본 학회 회원의 학술활동 및 상호교류에 대한 지원 업무
4. 기타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제반 국제협력활동의 지원 업무

제3조(구성)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및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국제담당 부회장, 부위원장은 국제이사 중에서 보하고,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.

제4조(위원장, 부위원장 및 위원)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위원장은 위원 중 제5조의 분과별로 분과위원을 위촉하여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한다.

제5조(분과) 본 위원회는 국제교류 대상 국가 및 전문분야에 따라 담당 분과를 둘 수 있다.

제6조(회의) 본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의안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.

제7조(간사) 위원회의 회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간사는 회장이 위촉한다.

## 부 칙

1. 이 규정은 2010년 1월 13일부터 제정하여 시행한다.